

원숭이두창 시전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 및 수입검역 철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 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 동물에서는 원숭이[덴마크(1958년), 미국(1959년, 1962년), 콩고(1986년), 코트디부아르(2012년)], 오랑우탄[네덜란드(1964년)], 설치류[콩고(1985년 줄다람쥐), 미국(2003년 프레리 독)]에서 발생 보고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 * (SPF동물) 특정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및 기생충이 존재하지 않는 실험용 동물을 말함
- * (수입실적) '22년 설치류는 SPF동물 483건 223,123마리, 원숭이는 수입실적 없음
- * (검역기간) 원숭이는 30일, 설치류는 5일간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받으며, 현재까지 검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음

또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개·고양이)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하였다.

- * (일반 예방수칙)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설치류 등) 접촉자제 및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원숭이두창 의심 또는 확진자는 반려동물 등 접촉금지 등
- * (반려동물 등 검사 및 격리) 확진자 동일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은 자택격리(21일간) 및 정밀검사,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시설 격리(21일간) 및 정밀검사 등
- * (수의사 진료 가이드라인) 역학관련 애완용 설치류 및 개·고양이 진료 시 개인보호 장비 착용, 의심동물 발견 시 지자체 통보 및 검사 등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실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반려동물(개,고양이)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김기홍 (044-201-2558)
담당 부서 <검역>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변상문 (044-201-2071)
		담당자	사무관	이재명 (044-201-2075)

